

**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
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『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』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 중 “100분의 80”을 “100분의 60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구입시 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7조(강서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)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. <단서 신설>	제7조(강서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) ----- ----- ----- ----- 60----- . 다만, 구입시 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한다.